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명	한글	윤웅烈	외교명	
	한자	尹雄烈	이명	자 英仲 / 호 磻溪
출생 연월일	1840년 4월 17일		사명 연월일	1911년 10월 2일
본적	충청도 아산군 둔포면 신항리 [1865년 주소]			
1904년 이전				
경력	1840. 4.17	출생 (해평윤씨 족보)		
	1856	무과에 급제 (윤치호일기, 634쪽)		
	1880. 2	수신사 김홍집의 수행원으로 일 (같은 자료, 617쪽, 634쪽)		
	1881. 5. 7	통리기무아문사 (승정원일기, 1881년 5월 7일)		
	1882	임오군란 후 일본으로 피신 (윤치호일기, 617쪽)		
	1883.3.17~1884.7.21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고종실록, 1883년 3월 17일, 1884년 7월 21일)		
	1884.10.18	갑신정변 때 형조 판서에 임명됨 (고종실록, 1884년 10월 18일)		
	1886.4.21~1894.6.22	갑신정변 실패 후 능주로 귀양 (고종실록, 1886년 4월 21일, 1894년 6월 22일)		
	1894.11.28	춘생문 사건에 가담, 상해로 망명 (윤치호일기, 634쪽)		
	1895. 2. 2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고종실록, 1895년 2월 2일)		
	1896	副領 補親衛 第一聯隊長, 참장 군부협판, 전라남도관찰사 (고종실록, 1896년 4월 24일, 4월 24일, 8월 5일)		

	1898.	중추원 1등의관, 경무사, 내부 협판, 법부 협판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겸임 고등재판소장 (고종실록, 1898년 5월 7일, 7월 9일, 8월 4일, 12 월 4일, 16일, 18일, 21일)
	1899.	귀족원경, 군부 대신 (고종실록, 1899년 1월 23일, 12월 2일)
	1901. 9. 5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팔괘장을 받음 (고종실록, 1901년 9월 5일)
	1903	군부 대신, 육군 부장, 원수부 검사국 총장 (고종실록, 1903년 7월 17일, 10월 7일, 22일)
1904년 ~ 1945년		
	1904. 1.23	군부 대신 (고종실록, 1904년 1월 23일)
	1905. 3.22	사립 강화육영학교에 贊成金 50원 기부 (황성신문, 1905년 3월 22일)
	1905. 7. 8	중추원 찬의 (고종실록, 1905년 7월 8일)
	1905.10.25	국민교육회에 찬성금 100원 기부 (황성신문, 1905년 10월 25일)
	1907. 5.25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소장 (황성신문, 1907년 6월 20일, 1908년 8월 4일)
	1907. 6	中署洞 商議專門學校 교장 (황성신문, 1907년 6월 18일)
	1907. 7. 9	대구군에서 경북 41개군 국채보상수금소장을 소 집하여 별정방침을 연설 (황성신문, 1907년 7월 15일)
	1907. 9. 3	군대 해산으로 육군 부장에서 해임됨 (황성신문, 1909년 9월 11일, 19일)
	1908. 3. 9	대일본(제국)황태자전하봉영한성부민회 (한성부민회) 부장 (황성신문, 1908년 3월 10일)
	1908. 7.16	국채보상금횡령혐의로 경시청에 체포되었다가 무 혐의로 풀려남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18일)

	1908. 8. 8	기호홍학회 특별평의회에서 회장에 선임 (황성신문, 1908년 8월 11일)
	1908. 8.28	국채보상의연금 보관실태 신문에 공개, 이후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장직 사직 (황성신문, 1908년 8월 4일, 29일)
	1908.12.19	仁平坊 민단장 (황성신문, 1908년 12월 24일)
	1909. 4.22 ~ 6. 2	일본관광단의 일원으로 도일 (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28일, 6월 4일)
	1910.10. 7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 공로로 남작 수작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2일)
	1910.12.15	보관 중이던 국채보상금 4만 2천여원을 통감부와 경무총감부에 이관 (매일신보, 1910년 12월 15일)
	1911. 1.13	일본 정부로부터 2만 5천원의 은서공채 증서 받음 (매일신보, 1911년 1월 14일; 朝鮮人に對する授官に關する意見[齋藤實문서100.6])
	1911.10. 2	사망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10월 2일) ※윤치호일기(645쪽)에서는 9월 22일로 기재

2. 사내봉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7호(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와 관련하여

1) 남작 수작

1910년 10월 7일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을 수작함.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10월 12일.

“明治四十三年十月七日 依朝鮮貴族令授男爵 尹惟烈”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授爵者氏名」.

“授爵者가 左와 如다더라. (중략) 男爵의 部 (중략) 尹雄烈 (후략)”

▶『매일신보』, 1911년 2월 23일, 「爵記本書奉授式」.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山縣 정무총감은 칙명을 받들고 어제 22일 오전 11시부터 총독관저에서 國分 인사국장, 桑原 비서관, 藤波 통역관, 陶山 통역관이 열석한 후 조선귀족 후작 이재완 이하 60여 명에게 대하여 작기 본서 봉수식을 거행하였는데, 각 귀족의 3분의 2는 모두 新製 대례복을 입고 기타는 연미복을 입은지라. 정오 12시에 식을 종료하였고 수여식에 참석한 자의 씨명은 左와 같더라. (중략) 동 [남작 - 작성자] 윤웅렬 (후략)”

▶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 『齋藤實文書』 100.6, 1926; 「순종실록」, 1910년 10월 7일;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續陰晴史』 권14(庚戌[1910]. 10월 7일); 『신한민보』, 1910년 11월 2일; 『韓民』, 1936년 8월 29일.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수작.

【참고사항】 작위 세습



1912년 1월 15일 첫째 아들 윤치호가 남작 작위를 습작하였다. 그런데 윤치호는 1911년 105인 사건 주모자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1912년 5월 22일 남작의 예우가 정지되었다가 1913년 10월 9일 失爵되었다.

- 출전: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역사비평사, 2001, 645쪽;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5월 22일, 1913년 11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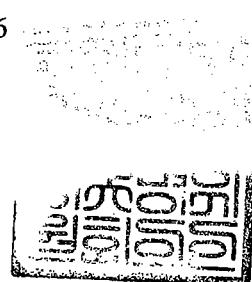
2.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은사공채 수령

▶ 『매일신보』 1911년 1월 14일 2면, 「公債本券交付」.

“優渥한 聖旨에 基하야 하사하신 귀족 班族의 은사공채권은 어제 총독부에서 이
미 보도한 바와 같이 차례로 교부하였는데, 많은 수의 인원에게 일시에 교부하
기 어려우므로 오전 오후 두 번에 나누어 山縣 정무총감이 國分 인사국장과 藤
波 통역관을 대동하고 총감실에 설치한 교부장소에서 직접 교부할 때 수령자는
별실에서 수령증을 쓰고 물러나온지라. 오전에 교부받은 자는 45명이니 (중략)
동[남작 - 작성자] 윤웅렬 (중략) 오후 2시에 각기 수령을 끝마치고 모두 물려갔
더라.”

▶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 『齋藤實文書』 100.6, 1926
일본정부로부터 25,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음.



판 단

- 윤웅렬은 한일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7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공로를 인정받아 남작 작위를 받고 1911년 9월 22일 사망할 때까지 그 작위를 유지하였다. 그의 이러한 수작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해당된다.
- 윤웅렬은 1911년 1월 13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윤웅렬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7호, 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 월 11 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